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에 관한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며, 가맹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모든 유형(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맹점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까지 가맹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고, 온누리상품권 등록갱신의 경우에도 기존 가맹등록 신청서를 활용토록 개선하였으며, 상품권 구분(종이, 전자)을 삭제하고 등록 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을 추가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5.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하려”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록신청서”를 각각 “등록 또는 갱신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하려”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로, “등록신청서”를 “등록 또는 갱신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 등록 [] 갱신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점포 개요	소속 시장 명				
	점포명			사업자번호	
	사업형태	사업자([]개인 []법인) []개인(노점)			주력상품
	점포규모	m ²	월 평균 매출액	만원	매출구성 도매 (%) / 소매 (%)
	사업장 주소				종업원 수 명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계좌 정보	거래은행	계좌번호
-------	------	------

※ 계좌정보는 QR코드 또는 바코드 방식의 모바일상품권을 고객이 사용시 가맹점에 결제대금 입금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인여부 확인	[]상인회장(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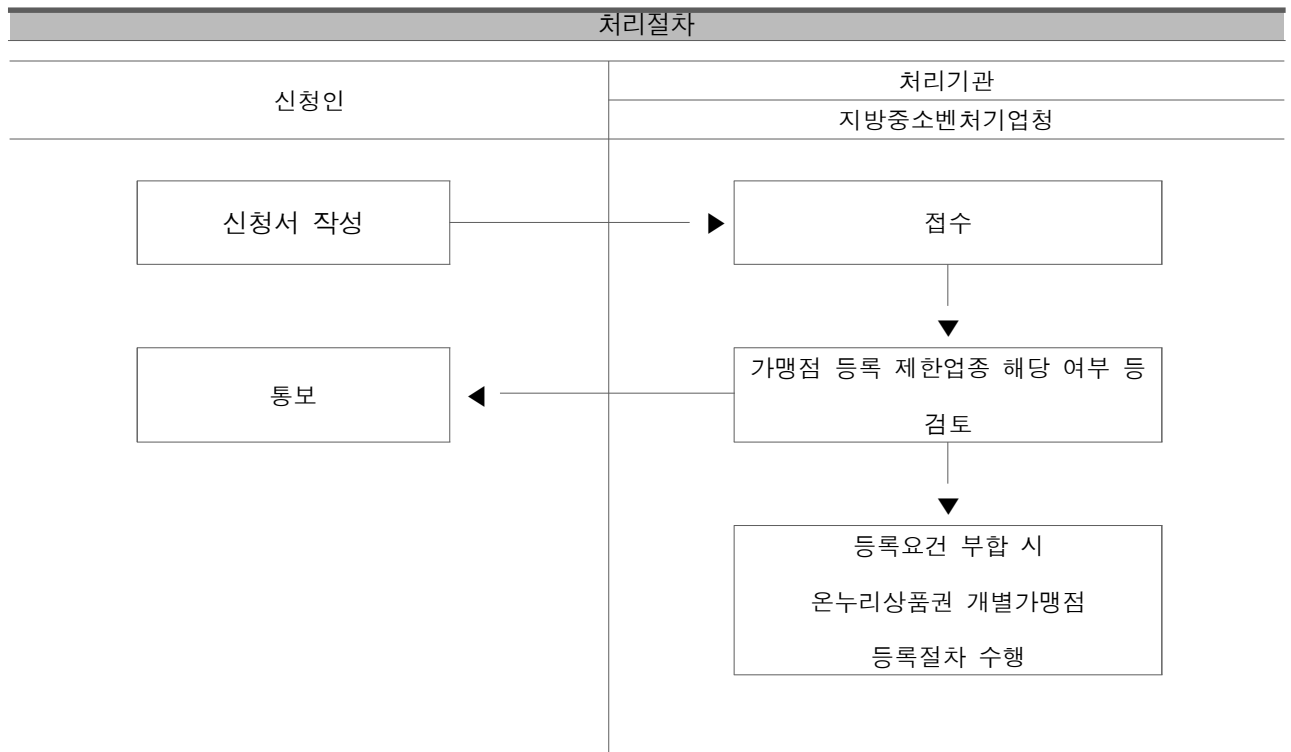
자료제출 동의서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16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업종 영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등록 및 갱신) ① -----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 ----- 등록 또는 갱신----- ----- -.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등록 또는 갱신----- ----- ----- ----- ----- -----.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 ----- -----등록 또는 갱신----- ----- ----- -----.